

1986년 개헌운동과 ‘5·3인천민주항쟁’

이재성 _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논문요약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헌법 개정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0년대에도 개헌 운동이 있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헌운동의 저항 주기와 현실 정치의 논리는 독재정권과 야당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성장한 민중운동 진영은 그러한 현실 정치의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는 1980년대 개헌운동이 정권 교체의 차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86년 3월부터 시작된 개헌 서명 운동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개되었다. 수만 명이 운집한 대중집회를 통해서 독재 정권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민주화운동은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나 빠르게 급진화되어 가는 민중운동 진영은 야당의 정치 행위를 기회주의로 판단하였고,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추구했다. 1986년 5월 3일에 열리려 했던 ‘인천대회’는 민주화운동 진영 내부의 갈등과 논쟁점이 드러난 투쟁이었다.

‘인천대회’ 직후 독재 정권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5·3인천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급진 이념과 민중운동 진영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독재정권에 대한 직접적 투쟁, 급진적 이념과 폭력을 불사한 투쟁은 직선제 문제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고 있다.

■ **주요어:** 5·3인천민주항쟁, 개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신한민주당(신민당), 저항권

1. 서론

19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 이행을 가능케 한 사건이면서 구체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한 개헌운동이었다. 그런데도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개헌운동으로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최종숙 2016, 14). 직선제 개헌은 6월항쟁을 통해 쟁취한 가장 커다란 성과로서, 6월항쟁이 성공한 투쟁이고 따라서 1987년이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의 원년이라는 평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였다. 그러나 직선제로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독재정권의 공범이자 후계자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6월항쟁을 통해 표출된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전격 수용한 노태우 민정당 총재의 ‘6·29선언’은 1987년 당시엔 독자적인 결단이자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평가되었으나, 이후 증언과 연구를 통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미국까지 연계된 정치적 전략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346-347; 정일준

2017, 23-26). 설상가상으로 1987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은 이후 민주헌법으로서의 긍정적 평가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실패를 가져온 '87년 체제'의 불행한 출발점으로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조현연 2017 참조).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정치사에서 권력 획득·연장이 헌법의 개정을 동반한 사례가 많았다. 헌법 제정 이후 12번의 개헌안 제출과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1969년의 '3선 개헌 반대운동', 1972년의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 등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개헌운동에 영향을 준 역사적 경험이었다. 하지만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이행은 주로 1987년 6월항쟁이 중심이 되어 연구되었고, 6월항쟁을 정점으로 그 이전 역사를 서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담론이 주류를 형성했다. 예를 들어, 최종숙(2016)이 '1986년의 실패와 1987년의 성공'이라는 주류적 해석을 수용하고 있고, 『한국민주화운동사(제3권)』에서도 1987년 '민주대연합'과 1986년 '개헌 서명운동' 당시를 비교 언급하고 있다. "1986년 전반기 야당이 개헌헌판식을 가질 때 재야와 관계를 갖기도 했지만, 이 시기에는 대체로 상호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협조할 때에도 다분히 동상이몽적이었다. 그렇지만 1987년 초 박종철고문사망사건 이후 이루어진 민주대연합은 단일한 조직을 통해 공동 협조가 잘되었고 단일한 목적으로 향해 활동했다"는 것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282; 이우재 2005 참조).

하지만 정대화(2005)는 노태우의 6·29선언에서부터 민주화운동이 분열하고 개헌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즉 "국민운동 본부는 6·29선언을 6월항쟁의 성과로 평가하는 데 집중한 반면 그것이 균

사정권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상황의 반전을 허용하면서 정치사회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정대화 2005, 226)고 평가했다. 또한 야당과 국민운동본부가 6.29선언 이후 개헌 ‘투쟁’을 독재정권과의 개헌 ‘협상’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민주화의 의제가 협소해지면서 독재정권의 전략이 관철되었으며(조현연 1997), 당시 민중운동 진영 역시 개헌투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헌’이라는 의제의 중요성 인식이나 제도권 현실 정치의 분석에 무능하여 개헌 자체에 대한 ‘거부와 무관심’에 머물렀다는 주장이나(조현연 2006b), 그 결과는 민주화운동의 배제 및 참여 포기, 그리고 분열이었으며, 1988년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의 질적인 발전에서의 지체였다는 평가도 있다(조현연 2007).

분명한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성공’으로 규정하고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을 모두 ‘실패’로 규정하는 담론이나, 그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를 모두 ‘발전’이나 ‘공고화’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논증이 필요한 부정확한 담론 또는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의 평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류적 담론의 효과는 19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5·3인천민주항쟁에 대해서는 2006년에 개최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5·3운동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학술토론회 이전에는 보고서 한 편도 발표된 바가 없었다. 그 행사에서 발표된 조현연(2006)과 조희연(2006), 그리고 이후 김영곤(2007), 이준한(2014), 서중석(2016), 최종훈(2020), 김창수(2020, 2021a) 등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

천5·3민주항쟁을 6월항쟁과 관계에서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구(이준한 2014)와 대체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서중석 2016)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차원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분석한 논문(김영곤 2007, 조희연 2006)과 사례 자체를 충실하게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논문(최중훈 2020, 김창수 2021b) 등이 있다. 하지만 인천5·3민주항쟁을 전체 민주화운동, 즉 1985년부터 시작된 ‘개헌운동’의 전개라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는 먼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되어 온 개헌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기본 패턴을 ‘저항 주기(cycle of protest)’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최중숙(2016)은 한국 민주화 이행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1985년 처음 등장한 ‘개헌 프레임’이 19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으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대중동원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 정대화(2005)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1단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유화 국면, 민통련 결성을 지나 반군사독재 대결 국면의 형성까지로, 2단계는 대결 국면에서 공안 정국을 거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발표를 거쳐 국민운동본부 결성과 6월항쟁까지로 보았다. 물론 많은 연구가 1987년 이전까지의 민주화운동을 다루기는 하지만, 위 연구들에서는 1986년까지의 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항쟁의 단순한 ‘전사(前史)’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저항 주기’에 대한 연구는 사회운동이 특정한 주기를 갖고 반복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선형적으로 전제하지는 않는다. 저항 주기는

갈등의 심화, 대중동원의 증가와 확산, 사회운동 ‘프레임(frame)’의 등장과 변형, 대립하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 저항의 종결 등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Tarrow 1994, 153; 1998, 142). 저항 주기는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시위 빈도, 동원 규모, 프레임 지속성 등을 기준으로 20~30년이라는 긴 시기를 분석할 수도 있고(홍성태 2016; Koopmans 1993), 10년 내외의 기간에 대해 ‘정치적 기회 구조’와 ‘프레임 정렬’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짧은 시기를 분석할 수도 있다(최종숙 2016). 어느 경우이든 저항 주기는 기존의 역사적 사례연구에서 사용하던 ‘시기 구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 2절에서 재구성되는 개헌 운동사에서 저항 주기 개념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반복되는 개헌운동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개념으로 원용된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1986년의 개헌운동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 5·3인천항쟁에 대한 연구는 5월 3일 인천대회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했으며, 당일 사건에 대한 1차 자료가 상세하게 분석된 연구가 드물었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자료, 최근 공개된 경찰청 조사자료, 구술자료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아카이브 자료 등을 중심으로, 1986년 초 반부에 전개된 개헌 서명운동 지역지부 결성식 및 현판식이라는 연속되는 전국 순회대회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이 연구는 5·3인천항쟁과 관련된 여러 논점을 헌법적 논의와 연결하여 평가해 보았다. 그동안 개헌운동은 주로 ‘직선제’ 쟁취와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헌법 문제를 다루어왔다. 사실상 민주화운동 연구에서 헌법의 쟁점은 협애화되거나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연구는 5·3인천항쟁이 가진 다양한 성격들을 구

분하여 인권투쟁, 직접행동, 그리고 저항권 등의 차원에서 시론적으로나마 그 의미를 찾아보았다.

2020년 6월에 윤관석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구)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천5·3민주항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인천시의회는 조성혜 의원(민주당, 비례)외 14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¹⁾ 본 연구는 위 용례를 참고하여 '5·3인천민주항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명칭은 '시기 + 장소 + 사건의 성격'의 순서로 규정이 되고, 시기나 장소는 생략되기도 한다.

2. 1970~1980년대 개헌운동의 '저항 주기'

1) 1974년 1백만인 개헌 서명운동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본 논문에서 '저항 주기(cycle of protest)'는 민주화

1)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주최(2020년 12월 15일). 이 자료집을 포함하여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인천5·3민주항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2018년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운동의 전체적 시기 구분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개헌운동’의 이름으로 20년간 진행되어 온 정치사회운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된 개념이다. 따라서 저항 주기 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연구의 저항 주기 분석 내용의 오류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그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개헌’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적용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저항 주기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주화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1985년 이전의 민주화운동이 ‘민주헌법’이나 ‘개헌’ 문제를 내세워 진행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독재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규모의 민주화운동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화와 연계하여 개헌을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은 대체로 제도 정치권 야당이였다. ‘개헌’이나 ‘개헌 반대’는 정치인들에는 매우 익숙한 의제였다. 1945년 정부 수립 이후 정치사에서 권력 획득·연장이 헌법의 개정을 동반한 사례가 많았다. 헌법 제정 이후 12번의 개헌안 제출과 9번의 개헌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권력 연장을 위해 무리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부정선거까지 자행하다가 1960년 4·19혁명으로 인해 권력을 잃었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을 거쳐, 1972년 소위 유신헌법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개헌 ‘반대’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었다. 1968년에 박정희는 ‘대통령 3선 연임’이 가능하게 한 개헌안을 공화당을 통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권은 신민당 의원을 포섭하고, 대한반공연맹, 대한재향군인회

등 50여 개의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개헌 지지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1969년 1월 신민당 김영삼 원내총무는 ‘개헌 반대’를 선언하고 ‘호헌 5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학가는 6월부터 ‘3선 개헌’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9월 14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17일에 국민투표에서 77.1%의 투표율과 65.1%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6차 개헌). 3선 개헌 반대운동은 1970년대에 들어 민주화운동으로서의 개헌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1970년대에 반유신 운동으로 활성화된 재야 정치 세력들은 1972년 12월 24일에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개헌 이슈가 처음 등장한 사례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의 강한 도전에 위협을 느껴, 직선제 선거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 선거제를 도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은 그나마 유지되던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한 긴급조치 선포를 통한 ‘공안 체제’를 구축하였다. 1973년부터 유신헌법 철폐 투쟁이 시작되었고, 1974년 초부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서명운동은 시작 2주일 만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미약하나마 학생운동이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개헌운동은 ‘공안 정국’으로 이어졌다. ‘긴급조치 1호’는 바로 개헌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1974년 4월 3일 민청학련 명의의 ‘민중·민족·민주선언’ 등이 대학가에 뿌려지자 ‘민청학련이 공산주의자의 배후 조종을 받는 폭력 국가 변란 기도 세력이며, 그 배후는 인민혁명당’이라고 발표하고, 저녁 10시를 기해 긴급조치 4호를 발

동했다. 그리고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사형 판결 후 곧바로 형을 집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9). 1970년대 초반에 전개된 '개헌운동'은 야당의 정치적 도전이라는 요소, 재야 운동권(학생운동)과 제도 정치권 야당의 연대라는 요소,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공안 탄압이라는 점에서 1980년대 개헌운동과 함께 저항 주기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

2) 1986년 1천만 명 개헌 서명운동과 민중운동

(1) 1985년 2·12총선 승리와 1986년 개헌운동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과 유신정권의 몰락 이후,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권은 이를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면서 공안 통치를 본격화했다. 이에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구속 또는 연금되거나, 정치활동의 규제를 받았다. 가택연금 상태의 김영삼은 1983년 5월 18일에 '단식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저격) 직후 민주화 국면에서 '양 김'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단일화 협상이 깨어지고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했으나, 1983년에는 다시 손을 맞잡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제 12대 총선에 대해 '선거투쟁 선언'을 발표하였다.

1985년 1월 18일 창당한 신민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 국정감사권 부활,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언론기본법 폐지 및 노동관계법 개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김정남 2005, 464).²⁾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 사건과 같은 해 3월 29일에 결성된 민주주의적 민주화운동 단체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후 민통련)의 출현 등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개헌운동은 점차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독재정권하의 야당은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명맥을 이어왔다. 쿠데타로 인해 국정과 의회가 중단될 때는 ‘장외’로 몰려 비자발적으로 ‘재야’ 정치집단이 되기도 했고, 의회가 운영되는 와중이라도 정치적 수단의 하나로 ‘장외’ 투쟁을 벌였다. 장외 투쟁에서는 새롭게 성장하는 ‘민중운동’ 진영의 도움을 받았다. 한국의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장내’와 ‘장외’ 투쟁을 병행했고, 실제로 장외 투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여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민중운동 진영은 야당의 행보에 대해 ‘기회주의’라고 비판했다.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진영에서도 개헌론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85년 10월 5일 서노련은 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등과 연합하여 ‘전국노동자 민주·민주·민족통일헌법 쟁취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과 신민당을 모두 비판하면 ‘민중이 주인되는 새

2) 이 의제들은 1987년 6월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를 내세워 전략적으로 제시한 ‘6·29선언’의 주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두 정치인의 비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이인자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지방자치제와 대학 자율화 실현 등이 주요 골자였다.

로운 사회를 약속하는 민주·민주·민족통일헌법'을 주장했다. 그것을 '삼민헌법'이라고 불렀다. 학생운동 역시 10월 26일 연세대에서 전학련 집회를 열고 '삼민헌법 쟁취와 수입개방 압력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10월 29일에는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2) 신민당의 장내·장외 투쟁과 민주운동권의 입장

1986년 1월 7일 민통련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사독재정권의 퇴진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헌법이 담아야 하는 내용으로는 첫째, 분단 극복 의지와 4월 혁명, 5·18광주민주항쟁 정신 계승, 둘째, 생존권, 저항권, 노동권, 교육권, 환경권 등의 보장 등을 꼽았다. 정치제도로는 직선제로의 개헌과 대통령 권한 제한, 의회 국정감사권 보장, 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73-75).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 제도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였다.

1986년 1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대통령 선거 방법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선례와 서울올림픽 개최라는 긴급한 국가적 과제가 성취되고 난 1989년에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대통령 국정연설이 끝난 직후에 '원의 개헌운동'을 결의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협을 중심으로 이미 1985년 12월에 '민주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신민당은 1986년 2월에 '2·12총선 승리 1주년 기념식'에서 개헌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1986년 3월 4일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에서 개헌을 위한 시국선언을 한 이후 5월까지 종교계(5건) 이외에 약 30여 개 대학의 교수 8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최종숙 2016, 40-43; 조현연 2006a, 16).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헌법과 민주화가 국민 앞에 하루속히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였다(『인천의 소리』 10호, 1986.4.30.). 1985년 하반기부터 학생운동 진영도 개헌을 위한 투쟁을 고민하고 있었다. 학생운동권의 주장은 9월경에는 ‘민주제 개헌투쟁론’이다가, 11월경에는 삼민(민중·민주·민족)헌법 쟁취론으로 변화하였고, 다시 1986년 2월경에는 ‘파쇼 헌법 철폐 투쟁론’으로 급진화되어 갔다. 내용적으로 민주제 개헌 투쟁론은 민통련 등 민중운동 다수의 견해와 유사한 것이었다. 삼민 헌법 쟁취론은 서노련 등 노동운동 측의 입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론과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직선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신민당의 주도 아래 민중운동 진영이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1986년 3~4월의 학생운동권은 큰 변화를 맞고 있었다. 1985년의 노선투쟁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크게 두 그룹이 형성되었다. 3월 21일에 서울대에서 ‘반제반군부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가 결성되었고, 4월 11일에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가 결성되었다. 민민투와 자민투는 노선의 차이를 둔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 상호 간에 격렬한 감정적 대립을 하기도 했다. 노선에 있어서 민민투는 자본주의의 계급 문제를 강조하면서, 개헌투쟁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 ‘헌법제정 국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투는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개헌투쟁보다 ‘반미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고원 2013, 이창언 2013). 초기에 자민투는 개헌운동보다 반미운동을 강조했으나, 전국적인 개헌운동 확산을 보면서 ‘직선제 개헌론’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민민투는 직선제 개헌론을 개량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4월 29일 전국 30개 대학 3,000여 명이 연세대에 모여 전국반제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합(민민학련)을 결성했다. 이들은 5·3인천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민민학련·민민투는 직선제 개헌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개헌 투쟁 열기를 ‘혁명적 정세가 형성되는 시기’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민민투와 자민투 모두 독재정권이 주도하는 ‘보수대연합’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신민당이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전두환 정권과 정치적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4월 27일 청주대회 이후 4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은 이만섭 국민당 총재, 이민우 신민당 총재,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이민우는 1987년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수이겠지만 좌익 학생들은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반발을 샀다. 이런 와중에 4월 28일 서울대 인근 신림사거리에서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벌이던 김세진, 이재호가 전경의 진압 작전에 몰려 저항하다가 분신·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고, 당일 서울대에서는 자민투 집회가, 연세대에서는 민민투의 연합체인 민민학련(전국반미반파쇼민족민주학생연맹) 집회가 열렸다. 5월 2일 자민투

와 민민투는 공동 집회를 열고 ‘모든 힘을 인천으로 총집결하자’며 신민당의 타협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3. 5·3인천항쟁의 전개 그리고 논쟁

1) 신민당의 개헌운동과 민중운동의 개입

5·3인천항쟁은 단 하루의 투쟁이었다. 하지만 5·3인천항쟁은 1986년 개헌투쟁 중에서 특히 개헌운동 지부 결성식 및 현판식을 매개로 한 민주화운동 진영의 활동을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개헌투쟁이 다시 공안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항 주기’의 변곡점이었다.

(1) 부산대회와 광주대회

1986년 3월 24일 오후 2시에 부산시 부산진구 대한극장에서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과 의원 60~70여 명, 당원 약 3,000~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추진위 부산시지부’(지부장 이기택 부총재) 결성대회가 열렸다. 김영삼은 ‘부산시지부의 결성은 유신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산 시민들이 영원한 민주 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대중 민주협 공동 의장은 경찰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육성 녹음테이프를 축사를 했다. 대회를 마친 신민당 지도부와 당원, 그리고 시민들은 600m 정도

떨어진 신민당 부산진구 지구당 당사까지 도보 행진을 했고, 근처 서면 로터리 일대에 모여 있던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대한극장에서 서면 로터리로 가는 4차선 도로 600m가 약 5,000명 인파로 메워졌다. 공식 일정 이후 대학생 등 일부 시민들이 스크림을 짜면서 가두시위에 나서려 하자 경찰은 진압을 시작하여 오후 6시경에 해산했다(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각 1986/3/23).

3월 30일 오후 2시에 전남 광주 YMCA 강당에서 개헌추진위 전남도지부(지부장 이증재 부총재) 결성대회가 열렸다. 이민우 총재, 김영삼 고문과 소속 의원 60여 명과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대표 등 재야인사들이 참여했다. 김대중 민주협 공동대표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가던 중 화곡동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귀가를 당했다. 김영삼 고문은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혁명을 거부할 때 이 땅에 폭력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민주협 공동 의장은 육성 테이프를 통한 연설에서 '나의 갈 길은 광주 영령들의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조국통일과 민중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뿐'이라며 '민주 회복을 위해 총궐기하자'고 말했다. 결성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 시내 금남로, 충장로 등 도심 거리와 도청 앞 광장 분수대는 시민과 학생들로 가득 찼다. 광주 시내 주요 도심지 도로들이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 시민들은 도청 앞 광장을 '민주시민의 광장'이라 부르며 집회를 진행하였고, 전남대 총학생회 등에서는 개헌의 당위성과 '삼민헌법 제정'을 주장하는 오색 전단을 대량 살포하는 등 대회장 주변에 약 12종의 유인물이 난무하였다. 결성대회 후 참석자들은 1~1.5km 정도 떨어진 대인동의 광주동·북구지구당(위원장 신기하)으로 이

동하여 현판식을 열었다.

당 지도부가 철수한 후에도 학생 등 4,000여 명은 해산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다. 저녁 7시경 대학생들 수백 명은 스크럼을 짜고 도청 쪽으로 진출하였고 강제 해산시키려던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밤 9시 30분경 시위대는 300여 명으로 줄었고 도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15m 높이의 광주직할시승격기념탑은 시위대에 의해 무너진 후 불에 탔다. 경찰은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가두시위와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최루탄을 사용하여 해산시켰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광주의 개헌추진 현판식과 관련하여 신민당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총 69명을 연행 조사하였고 방화 주동자 및 배후세력은 조사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시위대에 용공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현판식 참가자 수는 약 5,000~6,000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 국무성 버나드 칼브 대변인은 31일 야당의 광주 행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언제나 화해와 대화를 촉구해 왔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야당의 집회가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야당의 집회가 기본적으로 평화적이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이날 개헌 서명운동 광주지부 현판식 행사와 관련된 시위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각 1986/3/31).

광주대회 직후 전남민주청년운동연합은 “군사독재 퇴진투쟁 선언: 민주중주화운동의 방향전환과 전민중의 총궐기를 촉구하며”라는 선언문을 발표했고, 광주대회의 상황을 상세히 알리는 자료집을 발행했다.³⁾ 이 자료집은 민통련 산하 지역지부와 단체들에 전달되었고, 민중운동 진영이

신민당 개헌 지역지부 결성식과 현판식에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도청 앞 분수대를 메운 시민들과 민중대회를 개최한 광주대회가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찬란한 복권'이라고 평가했다(「3·30광주민중투쟁 자료집」, 10). 또한 광주대회는 '지속적으로 수세적 위축상태로 몰려온 군사 독재에게 결정적 일격'을 가한 사건이며, '군사독재퇴진투쟁의 가속화와 반군사독재 민중민주화 투쟁대열의 전국적, 전 대중적인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세는 우리에게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군사독재퇴진투쟁에 모든 민중민주화 운동의 결집을 요구한다. (중략) 민중민주화 운동의 주도적 투쟁을 통하여 군사독재퇴진을 실현시키고, 투쟁과정을 통하여 단련되어진 민중의 정치역량을 바탕으로 광범한 민중의 참여와 합의에 기초하여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3·30 광주민중투쟁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반군사독재 민중민주화투쟁 대열의 전국적·전대중적 확대의 계기를 올바르게 활용하여야 한다(「3·30광주민중투쟁자료집」, 10-11).

인천사회운동연합이 발행한 「인천의 소리 10호」 민중투쟁 특보(1986년 4월 30일 자)는 광주대회(3월 30일 개최)와 대구대회(4월 5일)의 상황을 알리면서 5월 투쟁을 독려하는 기획으로 제작되었다. 인사연은 광주대회에서 최

3) 「오월이여! 활화산 광주여! 전진하여 승리하라!! - 3.30광주민중투쟁자료집」. 전남민중청년운동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125770.

대 40만 명이 운집했고, 대구대회에서는 최대 10만여 명이 모여 '총궐기' 하였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광주대회에서 도청 앞 광장의 시민들이 대형 경축탑을 뜯어내 현 정권의 화형식을 거행하였음을 알렸다. 「인천의 소리 11호」 민중투쟁 특보(1986년 5월 16일 자)에서 다시 한번 광주대회와 대구대회의 진행 과정을 지도와 함께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2) 대구대회에서 인천대회까지

광주대회 이후 대구(4월 5일), 대전(4월 19일), 청주(4월 27일)에서 개헌 서명 지역지부 결성식 및 현판식이 차례로 거행되었다. 신민당의 추산으로 대구대회와 대전대회에 각각 4~5만 명이 모였고, 청주대회에는 약 2~3만 명이 모였다. 대구와 대전 등지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오전부터 저녁때 까지 가두시위를 벌였지만 광주대회 만큼의 격렬한 시위는 벌이지 않았다. 신민당은 자체 평가를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과 야당에 대한 세계 여론의 지지에 대해 확신을 표명했다. '양 김'과 이민우 등 신민당 지도부와 워커 주한 미 대사와의 연속 회담이 진행된 이후였다. 신민당 지도부는 '3개월 사이에 세상을 바꿔 놓았다'고 자부했다(동아일보 1986/4/24). '양 김'은 1970년대 개헌운동의 열기가 독재정권에 의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전 국민적 항쟁보다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독재정권과의 협상을 통한 상대적으로 온건한 정치변동을 선호했다. 이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는 강대국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도 부합했다.

인천대회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4월 27일 청주대회 이후 4월 30일 전두환 대통령은 이만섭 국민당 총재, 이민우 신민당 총재, 노태우 민정당

대표 등 3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는 “5월 3일 인천 현판식에 운동권 학생들이 몰려가자고 대자보에 선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평 일대에 위장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인천대회 참가를 선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88년 올림픽이 끝난 이후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이민우 총재는 ‘좌익 학생들은 단호히 다스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반발을 샀다. 야당의 청와대 회동과 학생운동 비판이 인천대회가 격렬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대학에는 ‘가자 인천으로’, ‘인천을 해방구로’, ‘신민당의 기회주의를 타도하자’는 등의 대자보가 붙어서 인천대회의 ‘전장화’는 예고되어 있었다(매일경제, 동아일보 각 1986/5/1; 경향신문 1986/5/5).

역설적으로 5·3인천대회와 관련된 가장 상세한 자료는 내무부가 작성한 「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이다.⁴⁾ 5·3인천항쟁을 5월 2일의 준비상황에서 시작하여 5월 3일 저녁 9시 40분 중구 경동 사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을 경찰이 해산시키는 것으로 5·3인천항쟁 일지는 마무리되고 있다. 기존 자료들은 민통련, 인사연, 인노련, 서노련 등의 활동 내용을

4) 내무부 경찰청 자료 관리번호 DA1431866 파일번호10 68-91쪽. 이 자료는 당일 사건이 철저히 정부 입장에서 재해석되어 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 정부 대응의 정치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치안당국’은 야당의 ‘정치행사 보호’라는 차원에서 대회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난동소요’ 중에도 ‘신민당 집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기다렸고, 신민당이 대회의 연기를 선포한 이후에야 시위대 해산을 시작했다고 항변했다. 이들 자료를 대조하여 역사적 사실로서 재구성하는 일은 기존 자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신민당, 자민투, 민민투 쪽의 활동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일지에 따르면 민통련과 인사련은 5월 2일부터 플래카드와 유인물 등을 준비했고, 경찰은 2일 21시부터 3일 새벽 5시까지 인천 일대에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유인물, 화염병 등을 압수했다. 신민당은 3일 오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대회장(주안 시민회관)과 인근 주안역 등 일대에 배치된 경찰들과 마찰이 일어났다. 12시경 인근 주안1동성당에서 민통련, 인사연, 민청련, 민불련 등 회원 500여 명이 시민회관 쪽으로 행진을 하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들은 '민주화 촉진 인천시민대회'를 열고 연설을 하면서 자체적인 집회를 진행했다. 1시경 인파는 4,000여 명으로 늘었다.

오후 1시경에 민민학련 대오가 주안역 인근부터 시위를 시작했고, 다량의 최루탄이 발사되는 가운데, 민민투 시위대가 신기촌 방면에서 집회를 열었고, 민정당 지구당사에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자민투는 시민회관 인근에서 행진하며 '미제국주의와 전두환은 즉각 물러가라'고 외쳤다. 1시 30분경 민통련 등에서 '민주화촉진 시민대회'를 열자고 결의했고 민중문화운동협의회에서 준비한 사물놀이패가 군중을 집결시켰다. 1시 40분경 인노련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경찰과의 일진일퇴 공방이 이어지다가, 시민회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신민당원의 승용차에 불이 나고 시위대는 경찰 측으로 차를 밀어내었다.

원래 신민당 지부 결성대회 시작 시간은 2시였다. 하지만 워낙 일찍부터 인파가 몰렸고 여러 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시작되었고, 경찰과의 충돌이 진행되고 있었다. 신민당은 가두방송으로 김영삼, 이민우의 도착을 알

리고 시위대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위대는 신민당을 비판하며 반대로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2시 30분경 주안초등학교 앞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전 과정에서 버스안내판과 공중전화박스 등이 파손되어 바리케이트로 사용되었고, 시민회관 앞 동쪽 차도에서는 시위대가 '미·일 외세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조기를 불태우기도 했다.⁵⁾ 이후 5시 20분까지 시위대와 경찰의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최루탄 가스차와 최루탄 운반 트럭이 차례로 시위대 쪽으로 들어왔다가 시위대의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시 20분에 신민당 홍사덕 대변인은 개헌 서명운동 경기·인천지부 결성식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인근 신민당 지구당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던 김영삼 등 당원들은 시민회관 안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 직후 경찰은 34개 중대로 시위대를 일시에 해산시켰다. 경찰에 의해 324명이 연행되었다. 6시 10분경 시민회관 안에 대기하던 신민당원 2,000여 명이 해산하고, 시민회관 앞 사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1,000여 명은 주안역과 제물포역 쪽으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도심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후 동암역, 석바위, 도화사거리 등과 서울 방면의 부천 곳곳에서 산발적 시위가 이어졌다. 저녁 9시 40분 중구 경동 사거리 동인천 방향 시위대 200명을 경찰이 해산시키는 것으로 5·3인천항쟁은 종료되었다.

5) 경찰 조사 자료와 이재용의 판결문에는 성조기 화형식이 언급되고 '상황도'로도 표시되어 있다. 『인천민주화운동사』(2019)와 김창수(2021b) 일지에는 누락되어 있다.

2) 경찰과 신민당·운동진영의 담론 투쟁

(1) 경찰의 수사와 사건의 개요

경기도경찰국의 종합수사 결과보고 문헌을 통해서는 5·3인천항쟁에 대한 당시公安 정권의 종합적인 시각과 구체적인 해석 내용을 알 수 있다. 수사보고 자료는 5월 4일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여 부천경찰서, 인천동부경찰서, 부평경찰서, 경기도경 등에서 매일같이 수사 진척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5월 20일에 경기도경이 「5·3사건 종합수사결과보고」 문헌을 작성하였고, 5월 28일에는 ‘피해 상황과 경찰의 경비 및 진압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황조사서(5·3시위)」가 작성되었다(관리번호 DA1431857. 파일번호2. pp. 71-87). 종합수사결과 및 실황조사서를 통해 5·3인천항쟁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5·3시위’에는 조직적으로 민통련, 민민투, 자민투, EYC, 민청련, 민불연, 인사련, 인노련, 서노련 등이 참여하였고, 서울대 등 20여 개 이상의 소속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연행자 350명 중 학생이 248명, 노동자는 23명, 회사원 3명으로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민민투 차원의 세 가지 투쟁 계획을 파악하였고 이들은 인천지구 민정당 당사 타격 및 동인천역 4차 대중집회 후 경기도경찰국 점거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민정당사 방화는 연세대 민민투 부위원장 제성민 등의 지시에 의해 이상명, 이용주 등이 실행하였다. 「종합조사결과보고」(1986년 5월 20일)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5.3인천시위는 치밀한 계획하에 격렬한 폭력 시위를 목표로 삼고, 민통련의 주도로 재야 불순 세력과 대학 내 과격한 좌경의식화 학생단체가 야합, 종교 세력까지 방조하며, 신민당의 소위 민주화운동에 편승, 인천시위를 기폭제로 삼아 군중을 선동,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전복하려던 과대망상적 난동시위였으며, 경찰력이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그 흥계를 와해시킨 것이다.⁶⁾

검찰은 5월 1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5·3인천시위를 “학원의 급진좌경분자와 재야의 일부 과격세력이 신민당의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일을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준비 아래 격렬한 폭력시위를 감행하여 치안기능을 마비시킨 후 이를 이용, 소위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발표에서 검찰은 구속자들을 ‘난동소요’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의도임을 드러냈다.

(2) 신민당과 민통련 등의 대응

정부와 경찰·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신민당과 민통련 등은 「인천사태의 진상」(1986/5/15)이나 「‘5·3인천민주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1986/5/19) 등의 자료를 통해서 반박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12579,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등록번호 10737). 신민당은 인천대회의 무산이 ‘현 정권의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

6) DA1431856. 파일번호1. pp. 172. 인용하면서 일부 문장 교정을 하였음.

적 공작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대회 전과 당일에 수만 명의 전투경찰이 삼엄한 경계와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대회를 방해하였고, 그림에도 각목, 화염병, 유인물 등이 대회장 주변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대회 시작 전에 '학생과 근로자로 가장한' 2,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다가, '미제 축출', '인천 해방구', '신민당은 각성하라'는 격렬한 구호를 외친 것은 '마치 재야 학생 운동권과 신민당과의 이간 분열을 의도하려는 당국의 공작, 방임 전술의 인상이 짙게 보였다'고 주장했다. 민정당사 방화나 신민당 표식이 있는 승용차 방화 사건 역시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스차(페퍼포그) '탈취' 장면도 조작·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통련 역시 검찰 발표가 '허위사실과 조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고, '경기도경 점거'와 같은 무리한 계획 수립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면서, 전체적으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민중의 정당한 투쟁을 음모나 폭거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통련 지역조직인 인사연은 경찰이 1만여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무차별로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와 충돌을 조장하였으며, 시위대 내부에 경찰 프락치가 과격 시위를 유도하였고, 신민당 승용차 방화 역시 '프락치'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민당과 민통련 등에서 당국의 조작과 왜곡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데 있어, 경찰은 의혹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작성했다. 「23개항에 대한 답변자료(인천사태관련)」(관리번호 DA1431870 파일번호 14. pp. 1-51)이라는 자료는 시위용품이 반입된 이유, 진압 경찰의 규모, 진압 작전

의 타당성, 가스차 등이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소위 ‘괴한’의 존재 의혹 등에 대해 상세한 반론을 펴고 있다. 그에 반해 이후 신민당이나 민통련 등은 시위 양상 자체에 대한 조작설을 크게 제기하지 않았다. 조작설이나 정당방위론은 신민당과 민중운동권의 정치적 대응 전략이었는데, 사실 민민학련의 전술팀에서는 당시 상황을 ‘혁명의 시기’로 보고, 수십만의 군중이 인천에 모이면 광주항쟁과 같은 국면이 전개되어, 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당시 지도부는 인천 주요 도심을 2~3일 간 장악하고, 경기도경찰청에서 무기를 확보한다면 혁명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다. 민정당 지구당사 방화도 ‘기선 제압’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송동현 2013).

4. 국가폭력과 민중운동 그리고 헌법

1) 경찰 폭력과 사법 폭력

(1) 구속자 고문과 인권 투쟁

5·3인천항쟁은 본격적인 공안정국, ‘저항 주기’의 변곡점으로서 ‘독재정권에 의해 준비된’ 공안정국의 시작이었다. 민통련은 문익환 의장, 계훈제 부의장, 이창복 부의장, 장기표 정책연구실장 등이 구속되고 그 외 집행부 거의 전원에 대해 전국적 지명수배령이 내려졌다. 1986년 7월 현재 거의 60여 명의 민통련 관계자들이 구속 수배되었다. 민통련 지역지부로서 인

천대회 준비를 맡았던 인사연은 활동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인사연 핵심 지도부 전원이 수배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념과 전략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서 해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민민투 소속 학생들은 폭력 시위의 당사자로 지목되어 대대적으로 검거되었다. 서노련과 인노련 역시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되고 내부 논쟁에 휩싸여 조직이 와해되어 갔다. 자민투는 10월 건국대 사건을 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1986년 하반기 민주화운동 진영은 큰 시련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인천대회 당일 연행된 129명의 학생, 노동자, 민주 인사들은 열흘이 넘도록 가족 면회조차 차단된 채 조사를 받으며 폭행과 고문이 자행되었다. 구속자 가족들은 6월 11일부터 신민당 중앙당사에서 ‘우리 아들, 딸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며 농성을 시작했다.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신민당은 노승환, 유재연 의원과 이택돈 변호사를 교도소에 파견하여 고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인천의 소리』 제12호, 1986/7/2). 인천경찰서 구속자들은 경찰서에서 집단폭행을 받으며 투석이나 조직 가입 등에 대한 거짓 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요받았다. 부평경찰서에서는 집단 구타에 더해 이틀 동안 두 시간 재우기, 옷을 벗기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후 물을 코에 넣는 물고문, 전자봉을 이용한 전기고문 등이 자행되었다. 부천경찰서에서는 고춧가루 탄 물을 코에 넣거나, 당구봉으로 전신을 구타당한 사례도 나왔다. 특히 여성 구속자들에 대한 성고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천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이다.

1986년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인천교도소 수감자 37명 전원은 ‘소요죄 적용 철회’, ‘양심수 전원 석방’, ‘용공 조작 중지’ 등 4개 항의 요구를 수

의 위에 치약으로 쓰고 단식 투쟁을 벌였다. 1986년 7월 7일 인천 답동 가톨릭회관과 그 일대 거리에서 인사연 등 6개 단체 공동 주최로 「고문·폭력 정권 타도를 위한 인천지역 민중투쟁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5·3시위 관련자에 대한 고문, 폭행, 부천경찰서 문귀동 성고문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경찰은 2,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대회장을 봉쇄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986년 11월 17일 자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선언」을 통해서 86아시안게임 직후부터 정부가 서울대 대자보 사건, 국회 유성환 의원 원내 발언 파동, ML당 사건, 건국대 사건 등 용공 좌경 사건들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재정권을 지탱하기 위하여 냉전논리와 위기의식을 강요하고 이데올로기를 정치적 반대자인 민주인사 탄압의 명분으로 악용하는 데에서 반공이데올로기의 철폐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라 말하고 '가장 최선의 반공은 국민의 민주적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이 인간다운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 소요죄와 '직접행동'

내무부와 검찰의 중간발표,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 드러나는 5·3인 천항쟁 관련 구속자에 대한 법적 판결 내용은 5·3인천대회 자체가 '소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내무부는 '인천 소요사건은 6.25 이후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사회 각 분야에 돌아난 용공 불순세력이 신민당의 인천대회 날을 현 체제 전복을 위한 결정적인 투쟁의 날로 정하고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아래 격렬한 폭력 소요를 감행하여 치안기능을 마비시킨 후 이를 이용 소위 민중봉기를 유발하려 했던 사건'으로 규정했다.⁷⁾ 물론 시위 진압에 실제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이 대규모 시위가 온종일 벌어지는 것을 수수방관한 것은 계산된 음모라는 주장도 있다(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19, 171). 그러나 1980년대 민중운동이 저항폭력을 사용했다는 점은 분명하며, 공안 당국이 진압 시점을 미루어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 전술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미 공안 당국은 신민당 개헌 집회의 '보장'을 위해 공권력 개입을 늦춘 것이라는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직접적으로 저항폭력 문제를 다룬다면 5·3인천항쟁에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된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로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즉, 이 조항과 유사한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 기소된 경우가 2014년 한 해에만 26,369건인 반면, 소요죄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명 기소에 불과하다. 이는 소요죄 적용에 매우 제한적인 기준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법 조문과 달리 실제로는 국가적 혹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적 폭동에 적용되는 조항이 소요죄이다. 5·3인천항

7) 「5·3인천소요사건 진상보고」 내무부. 경찰청 자료 관리번호 DA1431866 파일번호10 p. 81.

쟁이 ‘국헌문란 혹은 국토침탈’의 목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내란죄가 된다. 그리고 국헌문란과 국토침탈의 목적 없이 ‘한 지방의 평온·안전 혹은 법질서’를 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면 집시법 위반이 된다(김정환 2016, 134, 140). 만일 5공화국 헌법을 그 자체로 ‘국헌’으로 인정한다면 5·3인천항쟁 참여자들 일부가 내걸었던 구호는 소요죄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5·3인천항쟁의 정당성은 소요죄 적용과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중 한 개념이 ‘직접행동’이다. 직접행동(direct action)은 일반적으로는 시위, 농성, 데모를 말하고 극단적으로는 소요와 폭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 근현대 민주화운동에서 ‘저항적 시민권’의 개념은 그 실천 양태에 따라 시민불복종, 직접행동, 그리고 혁명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여기서 직접행동은 헌법 유린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거나 헌법 개정, 체제의 질적 변화를 실행행사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다(오동엽 2017, 34; 강정인 1989 참조). 실제로 이재영 외 9인은 1986년 9월 26일에 소요죄 등 판결을 받고 징역 1년 또는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항소를 했다. 검찰도 형량이 적다고 항소를 했다. 이재영 등의 항소 이유는, 인천대회에서의 폭력 사용은 방어적인 정당방위라는 점, 대체로 평화시위였다는 점, 다중이 폭행, 헐박, 손괴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소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당일의 행위 자체는 소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익의 교량(較量),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원칙⁸⁾에 맞아야 한다고 전제하며 항고를 기각하였다. 대체로 1980년대 민중운동의 법정 투쟁 전략은 이념적 문제

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었다. 즉, ‘헌법 수호권적 저항권’의 차원에서 직접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폭력 행위 그 자체만의 정당성 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벌임으로써, 5·3인천항쟁의 ‘개헌투쟁’과 그 차원을 넘어서는 민중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논의에서 배제한 결과가 되었다.

2) 민중운동의 정당성: 헌법과 저항권

(1) 선도투쟁과 대중투쟁

5·3인천항쟁 직후 민통련은 공안 당국의 파상적인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민통련 지역조직들은 특집 유인물을 제작하여 인천대회가 ‘군사독재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으며 ‘이 땅의 민중 운동사에 획기적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⁹⁾ 1986년 7월에는 민통련과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천주교도시빈민사목협의회 등의 대표자가 모여 ‘개헌투쟁’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¹⁰⁾ 이들은 ‘민중의 생존권 확보는 정치적 해결 없이 실현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유신헌법을 계승한 5공화국 ‘독재헌법’을 개정해야 현 정권의 장기 집권

8) 법익의 교량은 행위로 희생되는 법익보다 보호되는 법익이 커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수단·방법의 정당성과 상당성은 목적과 수단,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성과 보충성은 그 행위가 부득이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조건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재판부의 몫이지만, 피고는 그것을 논증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9) 민통련 「민중의 소리」 1986/5/10; 민통련 강원지부 「민주강원」 1986/5/23 등.

10) “개헌투쟁과 민중생존권”, 「민주노동」 제17호, 1986년 7월, 4-8.

음모를 막아낼 수 있고, 반대로 현 정권의 퇴진 없이는 현행 헌법의 민주적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헌법 그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 군부정권이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약점으로서 신민당 및 재야 정치권과 민족운동권 그리고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아보겠다는 국민적 열망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 제17호, 1986년 7월, 강조는 인용자).

이후 1986년 8월에 민통련 본부와 지역지부가 모여 ‘민주헌법쟁취투쟁’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고, 9월에는 5·3인천대회를 준비한 인사연의 평가가 있었다. 민통련 입장은 처음부터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이나 학생운동권의 ‘파쇼헌법 철폐’가 아닌 ‘군사독재 퇴진’이었다. 특히 3월 30일 광주대회에서 30만 인파(주최 측 추산)가 모인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개된 ‘민중대회’ 양상의 투쟁은 이후 신민당 개헌추진 지역지부 결성식 및 현판식에 민통련이 별도의 민중집회를 개최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민통련 등 재야 세력은 수만 명이 운집한 대중집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선도 투쟁론과 대중투쟁론이 경합을 벌이면서, 신민당과 재야의 분열과 재야 내부의 분열이 극복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¹¹⁾

민통련은 연좌농성방식을 통해 군중을 모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위대는 연좌농성 군중을 향하여 나와 싸우라고 독촉하는 가운데, (중략) 대중이 스스로 싸우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전위대가 싸우면서 대중의 참여를 호소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현장에서 전술상의 큰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민중운동권의 전술이 크게 갈라진 배경에는 애초부터 집회 공간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¹²⁾

민통련은 스스로를 민중운동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민중운동의 민주화 운동 목표를 '보수대연합 음모를 철저히 깨부수는 것'으로 정했다. 그 일환으로 '군사독재집단의 음모에 타협해 들어가는 집단의 의도를 폭로하고 저지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는 재야 운동권과 제도 정치권을 오가는 신민당의 '유연한' 전략과 정치적 선택에 대한 입장이었다(「인천의 소리」 제12호, 1986/7/2). 민통련 등 '민중운동' 세력에게는 신민당의 개헌운동 과정에서 신민당과 노선을 달리하여 민주·통일운동의 이념을 분명히 드러낸 점과 신민당의 타협주의적 보수대연합 추구 세력의 시도를 비판, 견제하였다는 점은 과오가 아닌 성과였다(「인천의 소리」 제12호, 1986/7/2).

민통련 가맹 단체들 안에서 1986년 상반기 개헌투쟁 과정에서 선도투쟁론과 대중투쟁론의 논쟁이 계속 존재했다. 선도투쟁론의 흐름에 속해 있던 노동운동권, 학생운동권 그리고 민통련 내 민청련 등에서는 '정치 상

11) 「민주헌법쟁취투쟁의 평가와 반성」, 민주통일 5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9) 133-134,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창립2주년기념 및 제3차정기총회」, 1986년 9월.

12) 「민주헌법쟁취투쟁의 평가와 반성」, 민주통일 5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9) 136.

황은 고양어 되어 있으나 무모한 대중투쟁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5·3인천대회는 대중에 대하여 운동권의 이념을 훈련하는 교육장이요 선전장으로서 군사독재타도와 더불어 보수야당의 기만성과 외세의 본질을 폭로하는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의의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대중투쟁론의 흐름 속에 있던 민통련 본부나 지역단위 조직에서는 '신민당과의 차별성은 현 단계에서 부차적이며, 정세의 고양기에는 대중투쟁을 통해 대중의 요구에 답하고, 전망을 제시·강화해야' 하며, 신민당과의 차별성은 '신민당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군사독재 타도투쟁에 집중하면서 비타협적이고 효과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³⁾ 대중운동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빨리 선도투쟁을 전개한 노동운동권과 학생운동권으로 인해 인천대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더 큰 투쟁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 된다. 반대로 선도투쟁론의 입장에서 보면, 민통련 등의 구상은 조직된 대중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열기, 자연발생적 투쟁에 의존한 것으로 비판되었다. 게다가 신민당을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들과 연대한다는 것도 수용하기 어려웠다.

5·3인천항쟁은 민중운동 내 단체들이 대중운동론으로 노선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5월 9일 자민투는 '5월특위'를 결성하였고 5·3인천항쟁 이후 변화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전 '반전반핵' 구호나 신민당을 '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고, 점

13) 「민주헌법쟁취투쟁의 평가와 반성」, 민주통일 5호.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9) 133-134.

차 직선제 개헌론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자민투는 5·3 인천항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민투의 전국조직인 민민학련의 위상에 맞는 자민투 계열의 전국연합체를 결성하려 했다. 그것이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이었다.¹⁴⁾ 공안 당국은 애학투련을 친북 공산혁명단체로 규정하고 결성대회가 열리는 건국대에 대대적인 경찰 병력을 투입, 결성식은 농성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1,525명이 연행되고 그중 1,290여 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NL계열 학생운동은 보다 더 대중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반면, 민민투는 5·3인천투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5월 15일에 연세대에서 ‘반외세반독재 민족민주 헌제의 쟁취 투쟁본부’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신민당을 더욱 거세게 비판하였다.¹⁵⁾

(2) 반체제운동과 저항권

인천5·3항쟁이 ‘폭력시위’가 된 데에는 선도투쟁론에 입각한 노동운동권과 학생운동권의 독자적인 투쟁전술의 영향이 컸다. 민통련과 인사연은 인천대회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투쟁을 오래 끌어나가기 위한 전술을 짰다. 즉 신민당의 공식 대회는 무난하게 치르게 하고, 그동안 연좌농성 등

14) 애학투의 참여 단체명을 보면 각 대학의 민민투와 자민투 이름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 즉 5개 대학의 자민투와 16개 대학의 민민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자민투와 민민투의 연합조직이 아니라, 자민투 계열의 조직이다. 즉 이름만 민민투이고 조직 내부는 자민투의 노선을 따르는 조직이었다(“민민투·자민투·애학투”. 1986).

15) “민민투·자민투·애학투”. 1986. 장성욱.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건번호 45074.

을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헌판식이 끝난 다음부터를 본격적인 시위의 시작으로 설정했다. 폭력 시위의 목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항권’에 대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기존 한국 학계의 주류 학설은 저항은 혁명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저항권 개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의 명문 규정에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다만 저항권은 새로운 헌법 질서를 세우는 적극적인 목적(즉 혁명)으로는 행사될 수 없고, 헌법의 개별 조항의 위반이 아닌 헌법의 기본 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인된다고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침해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최후의 방법(보충성)’으로 사용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¹⁶⁾

다른 학설은 법적으로 ‘저항’은 실정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저항권’은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으로부터 정당화의 근거를 찾는다. 이는 헌법이 저항권 정당화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서구 정치철학사나 동양 맹자의 경우에서도 저항권은 혁명권 그 자체로 인정되어 왔다(오승철 2009, 180). 다만 독일에서는 저항권 행사목적을 ‘기존 헌법 테두리 내로 제한’하였고,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즉, 저항권은 얼마든지 체제 변혁을 위한 사회운동에

16) 학계의 입장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저항권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판례집 제9권 2집, 338쪽. 오승철 2009, 177에서 재인용).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당성의 부여를 누가 하는가이다. 법원이 변혁적 민주운동 저항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보충성 원리'에 위배될 것이다.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로 시민권이 강한 체제라면, 변혁을 위한 사회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며, 역설적으로 명문화된 저항권은 사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저항권에 대한 제한도, 폭넓은 인정과 명문화도 각각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시민불복종과 직접행동, 그리고 저항권과 혁명 등의 논점은 사회적으로 정리되지 못했고 법적으로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1980년 5·18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저항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자연법(또는 초실정법)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저항권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로써 저항권 개념을 최소한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정태호 2000).

5. 결론

1987년 6월항쟁의 끝자락에 발표된 6·29선언,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끝까지 정권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군사독재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다. 다만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권 재창출을 하지는 못했다. 그것이 전체 민주화운동 진영의 성과였다. 6월항

쟁 이후 여야 정당의 합의로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87년 헌법'은 한국이 민주화 이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표로서 2021년 현재까지 3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다.

전체 민주화운동 진영을 크게 제도권 정치 세력(1986년 당시 신민당과 1987년 이후 민주당·평민당)과 재야 정치 세력으로 구분한다면, 야당 세력은 헌법 개정 운동을 이끌었고 헌법 개정 협상의 당사자였으나 김대중과 김영삼의 집권 경쟁 속에서 분열하여 결국 유력한 정권 교체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다른 한편 재야 정치 세력은 민통련 등 대중조직과 대중운동을 추구하는 세력과 노동·학생운동 등 보다 급진화된 정치 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통련 등은 김대중과 김영삼의 경쟁 속에서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면서 조직적 위기를 겪었다. 급진 세력들은 1986년 이후 '변혁이론'을 둘러싼 노선경쟁과 조직 활동을 통해 성장해 갔으나, 폐쇄적인 조직 논리와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의 '탈권위주의화' 전략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6월항쟁에서의 '최대 민주화 연합'이라는 것은 그 '최대'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한시적인 연합이었고,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것이었고, 조직적으로 연약한 것이었다. 그리고 '최대 연합' 안에 노동자 등 '민중' 세력은 배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의 구체적인 성격은 주류적인 '승리 담론'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을 1987년 1월 박종철의 죽음으로부터 서사화하거나,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1987년

으로 바로 연결하는 단순화된 결과론적 서사를 지양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은 복잡한 구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의 정치적, 이념적, 현실적, 도덕적 선택의 앙상블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평가는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조직위원회 편, 2016 참조).

1986년의 개헌운동을 주도한 주체 세력은 신민당과 민주위, 즉 김영삼과 김대중 그룹이었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헌법을 매개로 한 정치투쟁을 전개해 왔었고, 이들의 정치사 속에는 1969년 '3선 개헌 반대투쟁'을 지나 1970년 반유신 투쟁과 특히 1972년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이 자리잡고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군사독재정권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유력한 정적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체험해 왔고, 대중운동의 고양 시기에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어떻게 민주화운동 진영을 탄압하는지도 겪어 왔다. 따라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등장 이후 1985년 신민당 돌풍은 양 김 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면서, 자칫하면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위기였다.

반면에 1983년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청년들 중심의 민주화운동은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정권과 대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1970년대 이래 진보적 담론 속에서 성장한 민중주의적 담론을 마르크스주의, 종속이론, 마오주의, 레닌주의 등 세계사적인 진보 담론과 결합시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즉 변혁을 위한 투쟁이론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한국전쟁 이후 '금단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 까지도 거침없이 민주화운동에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생운동을 넘어 청년운동, 문화운동, 지역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사회 각 부

문에 민주화운동의 진지를 구축하였고, 1985년 2·12총선 이후 민통련으로 결집하였고, 신민당 개헌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1986년의 개헌운동의 특징은 한편에 신민당의 '직선제 개헌운동'이 있었다면, 다른 편에는 민중운동 진영의 '정권 퇴진 운동'이 있었다는 점이다.

전두환 정권은 '호헌'과 '개헌' 사이의 줄다리기를 하며 신민당과 재야 세력을 분리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 지역지부 결성식과 현판식은 바로 군사독재정권이 신민당을 국회로 끌어오고, 신민당과 재야 민주화운동권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천대회는 민중주의적 민주화운동권이 정부와 신민당을 함께 규탄하는 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민중운동진영은 선도투쟁과 대중투쟁, 반미투쟁과 반파쇼투쟁, 정권 퇴진투쟁과 개헌투쟁 등을 두고 치열한 내부 논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광의의 민주화운동권은 다양한 그룹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1986년 5월 3일에 민주화운동 진영은 저마다의 노선에 따라 독립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1987년 '국민운동본부' 구성과 대중투쟁 노선의 '성공'과 비견되면서 '실패한 투쟁'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전의 민주화운동 역사는 모두 실패일 뿐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성공 담론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첫째, 5·3인천항쟁은 개헌운동의 절정기에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의 일환으로서, 정치적으로 '소요'로 만들어진 투쟁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둘째, 신민당과 민통련은 공안탄압 와중에 '정부 조작설', '평화시위론'과 '민주화운동론'을 들어 방어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용공론, 난동소요론, 폭력시위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했다. 5·3인천항쟁의 실천 안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적 요소, 변혁운동적 요소, 반미·반제국주의 투쟁의 요소 등이 들어가 있었다. 민주화운동 진영은 시위를 통해 드러난 자신들의 입장과 이념을 숨김으로서, 이후 '투쟁 실패론'의 한 계기를 만들었다. 인천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의 전략은 대중운동론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1987년 '최대 민주연합' 담론에서 대중운동론이 '올바른 노선'이라는 전제로 해석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주류적 담론 안에서 5·3인천항쟁은 실패한 투쟁이자 잊힌 투쟁으로 즉, '사태'로 평가되고 있고, 그 투쟁의 의미와 정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접 행동과 저항권 논의를 통해서, 소요죄로 처벌받고 아직도 '5·3사태'로 표현되고 있는 5·3인천민주항쟁의 정당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급진적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학적, 법률적 정당화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한국의 '개헌운동'이 '직선제 개헌' 이슈로 협애화되었던 역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내부에는 반체제운동, 민주운동, 변혁운동, 사회주의운동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 기존 주류 담론에서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1986년 5·3인천항쟁은 저항권의 정당성 문제, 나아가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고 있다. 현 체제와 현 헌법이 도달한 지점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누리며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확실한 정의를 위한 모색과 실천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다~~

참고문헌

- 강정인. 1989. “한국에 있어서 민주화와 정치참여: 직접행동의 정치참여성, 폭력성 및 합리성에 관한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5호 1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고원. 2013. “민중민주(PD)파 학생운동의 집합적 특성과 메커니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이호룡·정근식 엮음.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 김영근. 2007. “5·3인천민주화운동과 노동자의 역할.” 『인천학연구』 6. 인천학연구원.
- 김정남. 2005. 『진실, 광장에 서다: 민주화운동 30년의 역정』. 창비.
- 김정환. 2016. “소요죄의 제한적 해석의 근거.” 『한국형사법학회』 제28권 1호. 한국형사법학회.
- 김창수. 2020.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국회의원.
- _____. 2021a. “인천5·3민주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KDF REPORT: Issue & Review on Democrac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_____. 2021b. “인천5·3민주항쟁 현장 상황 분석.” 「제35주년 인천5·3민주항쟁 학술토론회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I) 자료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제2권 - 유신체제기』. 돌배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제3권 -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돌베개.

- 서중석. 2016. “인천 5·3사태의 평가 - 대중성과 군부독재 타도 문제를 중심으로.” 「인천 5·3 민주항쟁 30년을 되돌아보다」. 인천광역시.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조직위원회.
- 송동현. 2013. “급진, 분열, 고립, 5.3인천”. 「내가 만난 80년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iminju.tistory.com/1068?category=535014>; 검색일 2021년 9월 1일)
- 오동엽. 2017. “한국 근현대 민주화운동의 저항적 민주시민권 요소 분석.”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철. 2009. “저항권이론의 재조명: 혁명권·저항권·시민불복종의 통합을 향한 탐색.” 『민주법학』 제4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명식. 2005. “민통련 운동의 전개과정과 평가.” 『기억과 전망』 12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우재. 2006. “5·3항쟁의 개요”. 『5·3에서 미래로: 5·3인천사태를 되돌아보며』. 인천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 이준한. 2014. “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제28주년 인천5·3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이창언. 2013. “NL(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이호룡·정근식 엮음.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 인천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19. 『인천민주화운동사』. 선인.
- 정대화. 2005. “민주화 과정에서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주체 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하반기(통권 8호). 민주사회와정책연구소.
- 정일준. 2017. “5공화국 헌법과 6·29선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자료집.
- 정태호. 2000.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공법연구』 28권 2호. 한국공법학회.
- 제30주년 인천5·3민주항쟁계승대회 조직위원회 편. 2016.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인천 5·3민주항쟁 증언록』.
- 조현연. 1997. “한국의 탈권위주의 정치변동의 ‘쇠퇴’ 과정에 관한 연구: 민중운동의 전략적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3권 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9-60.

- _____. 2006a. “5·3에서 미래로: 1986년 5·3인천투쟁과 ‘위기의 민주주의.’” 『5·3에서 미래로』. 인천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8-55.
- _____. 2006b. “헌법논쟁·개헌투쟁과 학생운동 1980~1996.” 『기억과 전망』 15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p. 170-199.
- _____. 2007. “‘87년 체제’의 정치적 등장 배경과 한국 민주주의 연구: 87년 9차 개헌과 13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16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17-252.
- 조희연. 2006. “5·3인천사태와 급진적 민주주의 정신.” 『5·3에서 미래로』. 인천5·3민주화운동 20주년 기념식 자료집.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56-75.
- 최종숙. 2016.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 최종훈. 2020. “1986년 인천 5·3항쟁의 전개와 의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태. 2016. “한국의 저항주기 궤적과 역사적 사회운동의 형성: 저항사건분석, 1960~1970.” 『기억과 전망』 34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39-284.
- Koopmans, Ruud. 1993. “The Dynamics of Protest Waves: West Germany 1965-1989.”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5).
- Tarrow, Sidney. 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2nd ed).
- <기타>
- “5·3인천민주항쟁”을 왜곡하지 말라 -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민통련.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건번호 10737.
- “민민투·자민투·애학투”. 1986. 장성욱.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건번호 45074.
- 「민주강원」 2호. 1986년 5월 23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강원지부.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879157.

- 「민주노동」 17호. 1986년 7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83261.
- 「민중의 소리」 화보특집. 1986년 5월 10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056579.
- 「오월이여! 활화산 광주여! 전진하여 승리하라!! - 3.30광주민중투쟁자료집」. 전남민주청년 운동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125770.
- 「인천사태의 진상」. 1986년 5월 15일. 신민당.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837672.
- 「인천의 소리」 10호. 1986년 4월 30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199365.
- _____. 11호. 1986년 5월 16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361484.
- _____. 12호. 1986년 7월 2일.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172161.
-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창립2주년기념 및 제3차 정기총회」. 1986년 9월. 인천지역사회운동 연합. 오픈아카이브 등록번호 0412845.
- 내무부 경찰청 수사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파일번호1. 관리번호 DA1431856.
- 내무부 경찰청 수사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파일번호10. 관리번호 DA1431866.
- 내무부 경찰청 수사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파일번호14. 관리번호 DA1431870.
- 내무부 경찰청 수사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파일번호2. 관리번호 DA1431857.

Abstract

The 1986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Lee, Jae Seong

Institute of Labor History, Sungkonghoe University, Research Fellow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re was also a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 in the 1970s,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80s also developed around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s cycles of protest in the 1970s and 1980s and the logic of real politics imposed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choices of the dictatorship and opposition parties. However, the newly arising Minjung Movement group developed a resistance strategy free from the logic of real politics, revealing the political potentia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 in the 1980s to go beyond regime change.

A signature campaig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began in March 1986, circulating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Busan, Gwangju, Daegu, and Daejeon. Through mass gathering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e dictatorship felt a sense of political crisis,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gradually expanded its power. However, the rapidly radicalizing Minjung Movement camp judged the the opposition party's political actions as opportunism and pursued an uncompromising struggle against the dictatorship. The Incheon Convention scheduled on May 3, 1986, to organize the Incheon and Gyeonggi branches of the Shinhan Democratic Party was canceled due to violent protests demand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convening of the People's Assembly, revealing the existence of conflicts and points of contention among the various groups

within the camp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mmediately after the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the dictatorship began a massive crackdown o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just like in the 1970s, the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rough anti-communist ideology and the reign of terror. The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demands a fair evaluation of the radical ideology and the contributive role of the Minjung Movement camp in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direct struggle against the dictatorship engaging radical ideology and violence requires us to look beyond the failed demands for direct elections at the time and further reflect on the movement's role in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 **Keywords:**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United Minjung Movement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UMDU), Right of Resistance

투고: 2021.9.17. 심사: 2021.10.19. 확정: 2021.11.3.